

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(제22조제1항 관련)

1.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

주 의 사 항	
○ 이 기기는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	
○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	
○ 이 기기는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.	
① 농도 : mg/L	② 총중량 :
③ 분석일자(기관) :	
④ 점검일자 :	
⑤ 비상연락처 :	
⑥ 관리책임자 :	

2.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

주 의 사 항	
○ 이 곳은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.	
○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.	
① 보관현황 :	
② 점검일자 :	
③ 보관개시일자 :	
④ 비상연락처 :	
⑤ 관리책임자 :	

비고

1.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,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.
2. 비·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, 표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, 주의사항 등 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3.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(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)으로 한다.
4. 표지의 색깔은 빨강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한다.